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5638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20. 7. 9.

판결 선고2020. 8.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645,068원 및 그중 200,315,390원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10%,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충남 태안군 D 임야 1,980.9m²에 관하여,
가. 피고 B, C 사이에 2018. 1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12. 12. 접수 제244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청 구 원 인

1. 수출신용보증

원고는 2018. 6. 15.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부탁으로,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E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금 19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6. 19.로 정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8. 6. 15.경 소외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금 19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6. 1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 주채무내용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금 22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9. 6. 19.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출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9. 2. 19.경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 바, 2019. 5. 17.현재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00,315,390원을 연체하여,

같은날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채권보전비용

수출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들은 위 약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는 위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금 2,352,880원(821,300+1,531,580)을 지출하였다가, 23,202원을 회수하여 그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채권보전비용잔액은 2,329,678원(2,352,880-23,202)입니다.

다. 지연손해금

수출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들은 위 약정 제8조 제2항 소정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수출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연 10%입니다.

4. 사해행위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1) 사전구상권의 발생

위 수출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는 F기관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나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 바(갑 제1호증 수출신용보증약정서 제7조 참조), 피고 회사는 2019. 2. 19.경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무렵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위 3.항 기재의 보증금액을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사전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고 할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제 1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9. 2. 19.경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충남 태안군 D 임야 1980.9㎡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은 곧 현실화 되어 피고 회사는 결국 도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나. 사해행위

(1)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상대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자로서,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악화로 인한 대출금연체로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의 재산인 충남 태안군 D 임야 1980.9㎡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발생전인 2018. 12. 12.경 피고 C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습니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자로서,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에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와 같은 사태에 이르면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수출신용보증사고발생전에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3) 피고 B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필연적으로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위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채무자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 악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자로서,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사정과 대출금연체로 인한 수출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곧 도산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아는 입장에 있었던 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점, 충남 태안군 D 임야 1980.9㎡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 B, C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 16276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00,315,390원, 채권보전비용잔액 2,329,678원 등 도합 202,645,068원 및 위 금원 중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00,315,39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 피고 B의 충남 태안군 D 임야 1980.9㎡에 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구상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재판장판사임기환

판사김희영

판사김종범

별지